

獨島는 처음부터 경찰이 지켰다!

- 의용수비대 주장은 歷史 왜곡 -

수시로 韓·日간의 외교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난 56년 경찰이 본격적으로 경비하기 전까지, 이곳을 지킨 것도 「의용 수비대」 보다는 경찰이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당시 울릉경찰서에 근무하며 독도 경비에 입해 왔다는 김산리 포항 경무회원이 중심이 된 警友들은 『독도 수호사가 왜곡 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독도수호 동지회」를 결성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국회, 청와대, 경찰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지난 56년 5월 당시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원들의 모습.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채 미궁에 빠져 있는 독도 역사는 오로지 그 역사를 창조한 우리들이 아니면 바로 잡을 수 없다고 결의하게 되었으며, 독도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우리 경찰이 지킨 것이지 의용수비대가 지킨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53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할 목적으로 그곳에 자국영토 표시목을 설치해 놓은 것을 직접 수거해 온 임무를 시작으로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울릉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독도경비대를 구성하여 지켜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독도 경비업무를 초기 단계부터 관장해 온 울릉경찰서 역시 독도 경비 관련 자료를 이미 폐기해 버려 입증할 수가 없어 안타까

울 뿐이며, 만일 이 사실을 이대로 묵과하거나 방치한다면 독도역사는 영원히 왜곡된 채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일본과 역사 왜곡문제를 다투기 이전에 우리 역사에 이러한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독도 수호동지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용 수비대란 지난 64년부터 56년까지 3년간 독도의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입도하여 채취하던 재향군인들로서 수시로 출몰하는 일본 순시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총기대여를 요청했고, 경찰이 당시 민간인에게 총기

를 대여할 수 없자 이들을 의용경찰이라 부르고 총기를 지급한 것을 시발로 그들 입으로 의용수비대라 명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후 정부방침에 따라 울릉 경찰이 전적으로 경비를 담당하게 된 지난 55년 7월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일본 순시선의 동경 감시와 연락 등 경비업무에 협조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도 경비업무에 관해 『지난 53년 정부에서 일본 순시선의 출몰에 대응해 울릉 경찰에 경비임무를 부여했고, 경사와 순경급 50여명으로 독도 경비대를 구성하여 1개조에 경사 1명과 순경 14명으로 구성된 15인씩 윤번제 교대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會 告

최근 일부 지방에서 경무회를 사칭,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전국경찰에 단속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 경무회에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第 2의 跳躍 우리가 말한다

— 警友會 기획조정위원회 출범 —



이규식 위원장
(前 해양경찰청장)

경우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생동하는 조직으로의 개혁과 발전 방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

조직발전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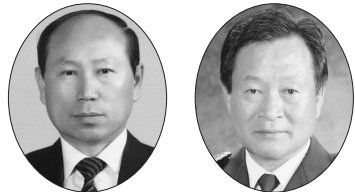


이홍상 위원장
(前 전북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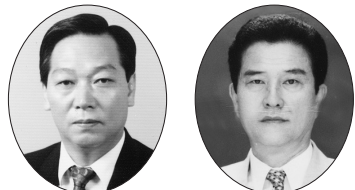
이현순 위원

김을로 위원



이수호 위원

배경순 위원



안경인 위원

손기석 위원



임무성 위원

안보·치안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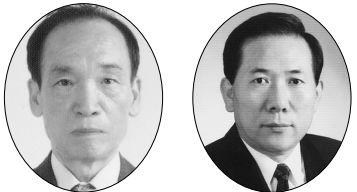


구종태 위원장
(前 대구청장)



신재철 위원

구자영 위원



이민중 위원

이강연 위원



조석현 위원

홍승상 위원



김종원 위원

사업·복지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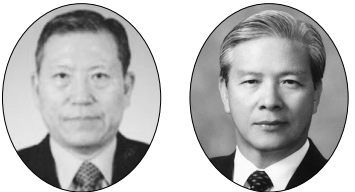


박희원 위원장
(前 전북청장)



김재현 위원

임승중 위원



이건세 위원

이정국 위원



이용준 위원

박창길 위원



이상두 위원

법규정비 위원회



전병용 위원장
(前 경남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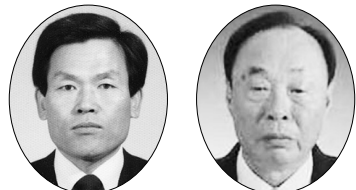
이수호 위원

최병일 위원



안경인 위원

박영목 위원



오병남 위원

김현구 위원

李相와의 교통상식<40>



서울 경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정모씨는 교통사고

를 내고 피해자에게 면허증만 주고 갔다가 그만 큰 곤욕을 치렀다.

정씨는 며칠 전 장사를 마치고 고객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고객의 권유로 이 정도는 관촬 아하고 반주로 딱 한잔을 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구리시 방면으로 가던 중 망우리를 지날 때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에 서 있던 사람의 다리를 치었다.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려보니 나이 어린 학생은 왼쪽 다리가 골절되어 아픈 표정을 짓고 인도에 걸쳐 앉아 있는데...

심한 부상사고 구호조치 없이 면허증, 명함만 주고 가면 뺑소니로 처리

식사하며 술 한잔을 마신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정씨는 학생에게 일단 면허증과 명함을 건네 주고는 치료를 받은 뒤 연락해 주면 보상해 주겠다고 말한 뒤 황급히 현장을 떠났다. 밤새 불안한 마음에 가슴 졸이고 있는데 이튿날 아침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면허증과 명함을 주었어도 그것만으로 사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과 병원에 후송조치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되어 형사입건 된다』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되어 불구속으로 처리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술 몇잔 마신 것이 두려워 얼떨결에 현장을 이탈했다가 그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못내 후회가 되었다.

이제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검사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의 檢·警 수사권 공유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경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정지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발그릇 다툼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의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大韓民國在郷警友會 120萬 會員 一同

※ 2005년 6월 20일
조선·한겨레 신문에 성명서 발표